# 검 토 보 고 서

의 안 번 호 제102호

2017. 12. 20.

건 명	논산시 공공시설 내 청각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및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(사회복지과)			
제안 및 제출자	민병춘의원 외 3명	제안연월일	2017. 11. 17.	
소관위원회	행정자치위원회	회부연월일	2017. 11. 17.	

## 보 고 내 용

### □ 제안이유

○ 청각장애인의 복지와 사회활동 참여를 증진시키고자 논산시에 설치된 공공시설에 청각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을 설치하고 청각장애인의 언어인 한국수화언어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

### □ 주요내용

- 가. 조례 제정 목적과 정의에 관한 사항(안 제1조 및 제2조)
- 나. 청각장애인 편의증진과 한국수화언어 활성화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(안 제4조)
- 다. 편의시설(자막시스템, 한국수어 통역전용 스크린 등) 설치 적용범위에 관한 사항(안 제5조)
  - 공공시설에 고정된 관람석 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경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이상인 시설
  - 공공시설에 고정된 관람석 등이 설치된 경우는 관람석 등이 300석 이상인 시설

- 라. 청각장애인의 편의증진을 위한 사항(안 제6조)
  - 청각장애인이 요구할 경우 자막 및 한국수화언어 통역을 제공 할 수 있도록 함
  - 공공시설 등에 자막시스템과 한국수화언어 통역전용 스크린을 설치 할 수 있도록 함
- 마. 한국수화언어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(안 제7조)
- 바. 청각장애인 편의증진과 한국수화언어 활성화를 위한 지원에 과한 사항(안 제9조)
  - 청각장애인 편의증진과 한국수화언어 활성화를 위한 사업 등에 필요한 예산과 행정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
  - 행사에 한국수화언어 통역을 제공하는 경우 한국수화언어 통역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함
- 사. 한국수화언어의 발전과 보급 활성화에 따른 포상에 관한 사항 (안 제11조)

#### □ 검토의견

- 본 제정 조례안은 청각장애인 편의증진 (청각장애인이 요구할 경우자막 및 한국수화언어 통역 제공, 공공시설 등에 자막시스템과 한국수화언어 통역전용 스크린을 설치)과 청각장애인의 언어인 한국수화언어 활성화를 위한 사업 등에 필요한 예산과 행정 지원을 할 수있도록 하는 내용으로, 청각장애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사회활동 참여를 증진시킬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는 점에서필요성이 인정되며
- 「장애인복지법」제23조, 「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」제8조 등 관계법령에 위배됨이 없다고 판단됨

# 검 토 보 고 서

의 안 번 호 제103호

2017. 12. 20.

건 명	<b>논산시 출산장려 ·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</b> (건강도시지원과)		
제안 및 제출자	민병춘의원 외 3명	제안연월일	2017. 11. 17.
소관위원회	행정자치위원회	회부연월일	2017. 11. 17.

## 보 고 내 용

## □ 제안이유

○ 「임신·출산관련 서비스 통합처리에 관한 규정」이 변경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여 출산을 장려하고 임산부의 건강관리 및 자녀양육을 지원하고자 함

### □ 주요내용

- 가. 출산장려 및 저출산 문제 극복을 위한 시장과 시민의 책무에 관한 사항 신설(안 제3조)
- 나. 시장이 시행하여야 하는 출산장려사업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규정 신설 (안 제4조)
  - 출산지원금 지원
  - 임신·출산 축하꾸러미 지원 등 출산 친화 환경조성
  - 예비맘 및 임산부 산전검사비 지원 등 건강관리
  - 임신·출산·양육 관련 프로그램 지원
  - 다자녀 가정 지원
  - 일·가정 균형 및 저출산 인식개선
  - 그 밖에 시장이 저출산 대책으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

다. 출산지원금 지급액을 상향 조정하고, 산전검사 및 출산용품과 예비맘 건강검진비를 지원 규정 신설(안 제6조제1항 및 제2항)

현 행		개 정	
첫째아	30만원	첫째아	50만원
둘째아		둘째아	100만원
셋째아 이상	100만원	셋째아	200만원
		넷째아	300만원
		다섯째아 이상	500만원

### □ 검토의견

- 본 개정 조례안은 「임신・출산관련 서비스 통합처리에 관한 규정」에 맞게 조문을 정비하는 한편, 출산을 장려하고 임산부의 건강관리와 자녀양육을 지원하고자 출산장려사업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, 임산부 건강 검진비 및 출산용품 지원, 출산지원금 상향 조정 등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일부지원을 하려는 것으로 저출산 극복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며,
- 「저출산·고령사회 기본법」, 「건강가정기본법」 등 관계법령에 위배됨이 없다고 판단됨